

프랜차이즈의 특수문제*

-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高부가가치 활용과 자금조달 -

박 환 일**

【국문 초록】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근래에 국내 도입된 상거래임에도 서비스업종의 국내 보급 및 해외 수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프랜차이즈란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프랜차이저(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신종 상행위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은행 자체의 영업범위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유형은 이른바 CPM(체크리스트, 프로세스, 매뉴얼)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복수의 자금지원 대상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시설의 관리·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전문 운영사의 설립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계약의 체결, 정형화된 방식의 시설의 관리·운영, 통합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요한다. 다만, 가맹업은 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화 거래의 대상으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일 가맹금을 받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른 하나는 상호·상표·영업표지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따른 가맹금, 로열티 등의 수입을 현재는 물론 장래의 것까지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유동화 대출(ABL)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당해 서비스업종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아 장래의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라고 판단

† 논문제출일: 2010. 10. 15. 심사개시일: 2010. 10. 18. 게재확정일: 2010. 10. 29.

* 본 주제의 일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용역과제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될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을 SPC에 양도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담보법제의 효용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채권회수 확보 방안이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달리 담보로 할 만한 부동산이 없는 가맹업자로서는 매우 유력한 자금조달방법이 아닐 수 없다.

장기설비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면 고객기업에 이러한 니즈가 있음을 알았을 때 적극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업무를 권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을 공여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외형이 성장함과 아울러 수익성 있는 내실을 다질 수 있다면 은행의 입장에서 유망한 사업분야로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프랜차이즈, 가맹업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특수목적회사, 현금흐름, 유동화 대출

- | | |
|---------------------------|-----------------------|
| I. 사례연구 | 2. [사례 1] 컨설팅의 개요 |
| II. 프랜차이즈 거래의 특성 | IV.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자금조달 |
| 1. 문제해결 방안 | 1. 신종 상행위를 이용한 유동화 거래 |
| 2. 프랜차이즈의 개념 | 2. [사례 2] 컨설팅의 개요 |
| 3. 본 사안에의 적용 | 3. ABL 거래의 특징 |
| III. 프랜차이즈 방식에 의한 영업망의 확충 | 4. ABL에 대한 법적인 검토 |
| 1. 문제의 제기 | V. 맺음말 |

I. 사례연구

[사례 1]

A은행은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 P/F)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은행이다. 그 동안 A은행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로서 학교시설의 건설에 참여하였던 B펀드에서 자문을 요청해 왔다. B펀드로서는 그가 참여한 프로젝트 건수와 자금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상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

근에 자금을 지원한 대학 기숙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종전과 달라 만일 B펀드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스템을 통일하기만 해도 관리·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고 기숙사비도 낮춰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A은행의 P/F 담당자는 B펀드가 참여하였던 시설의 관리·운영 실태를 돌아본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해결방안은 반드시 존재한다. B펀드가 제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다.
- 문제는 B펀드의 속성상 “대상시설의 관리·운영(operation and maintenance: O&M)을 전담할 인력이나 조직을 늘릴 수 없는데 무슨 방법을 원용할 수 있는가.”¹⁾ 다시 말해서 소수의 필수인력과 조직만으로 B펀드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자문에 대한 솔루션이다.

[사례 2]

C사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의 형태로 패스트푸드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레시피를 중국인의 입맛에 맞게 고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데 점포 임대 및 인테리어, 자재 구입, 종업원 훈련을 위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A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해 왔다.

A은행 담당자는 C사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

- 국내에서 가맹사업 방식으로 점포망을 늘린 것처럼 중국에 가서도 일단 시범사업을 해본 후 성과가 좋으면 현지 사업주가 가맹점에 참여하는 형태로 점포를 확장하도록 한다.
- 문제는 자금과 담보가 부족한 C사의 입장에서 “점포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서 C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자문에 대한 솔루션이다.

1) 이 문제는 필자에게 용역과제를 의뢰한 사학진흥재단의 당면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본고에서 서술하는 제 방안은 사학진흥재단의 사업과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II. 프랜차이즈 거래의 특성

1. 문제해결 방안

A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수반되는 자금지원은 물론 사업성검토, 금융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A은행의 P/F 담당자는 B펀드의 경우 대상사업을 표준화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B펀드의 노하우를 이용한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이 적합하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서 B펀드가 주된 대상시설인 대학기숙사의 관리·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하였으므로 이를 매뉴얼화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해도 좋겠다고 본 것이다. 대학기숙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그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장비는 외주(outsourcing)를 통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C사는 이미 국내에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보았다. 그에 필요한 자금은 국내 사업에서 조달하고 중국에서는 일차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본 후 중국내 유력한 사업자를 가맹점으로 유치하여 점포망을 확장하면 될 것이다. A은행의 담당자는 C사의 국내 사업이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여기서 나오는 장래의 현금흐름(future cash flow)을 유동화함으로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사례를 취급해본 적이 있는 A은행에서는 C사가 가맹점사업주로부터 받게 될 가맹금과 로열티 등의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유동화 대출(asset-backed loan: ABL)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요컨대 A은행의 담당자는 새로 개정된 상법의 가맹업에 관한 규정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다.

2. 프랜차이즈의 개념

본래 프랜차이즈란 공법관계에서 군주(국가)의 특권 또는 군주(국가)가 특정 개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뜻하였으나, 그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사법관계에서는 타인에

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까지 의미하게 되었다. 프랜차이즈 방식의 상거래에 있어서 특정 상호·상표·영업표지 등의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법상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법적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²⁾

우리 상법에서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상거래를 “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라 하고 리스, 팩토링과 함께 신중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6조 제20호).³⁾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상법에 의하면 프랜차이즈를 “자신의 상호·상표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상법 제168조의6).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2.5 제정,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함)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미국에서 최초로 프랜차이즈에 관한 입법을 한 캘리포니아주의 프랜차이즈투자법(Franchise Investment Law §31005a)에 의하면 프랜차이즈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2인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서 ① 프랜차이지(franchisee)는 프랜차이저(franchisor)에 의하여 실질적인 부문이 정해진 마케팅 계획 또는 시스템 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청약하고, 판매 또는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할 권리가 부여되며, ② 그러한 계획 또는 시스템에 따라 프랜차이지의 영업활동은 프랜차이저의 상표·영업표지·상호·로고·광고 또는 프랜차이저와 그 관계자를 표시하는 그 밖의 상업상의 표장과 실질적으로 결합관계에 있으며, ③ 직접 또

2) 김진섭·김혜영,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대왕사, 2002, 22면.

3)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8. <생략>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는 간접으로 프랜차이즈료의 지급이 의무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3. 본 사안에의 적용

이상과 같은 프랜차이즈의 개념은 B펀드가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학교시설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학교시설의 이용자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① 당해 시설에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사업방식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지재권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설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그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 ③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한편 표준화된 시설의 관리·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 가지 요구에 응하게 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게 되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B펀드가 영업적으로 프랜차이즈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⁵⁾ 그의 필수 요건인 지재권으로 보호되는 상호·상표 등을 등록하고 가맹사업법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한 학교시설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B펀드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가맹본부가 되어 각 학교시설에 통일된 품질기준이나 사업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중앙집중식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 B펀드가 목표로 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원리금의 원활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재화 및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이를 개선할 것
- 학교시설에 대하여 B펀드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자기 비용으로 갖추고 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것

한편 C사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가맹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중국에 가서도 초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 외에는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점포망을 확충하면 될 것이다. C사의 사례에서 문제의 핵심은

4) 홍순재, “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2, 7면.

5) 반면 비영리 정부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은 가맹금을 받지 않고 프랜차이즈 거래를 영업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를 직접 수행하더라도 상법이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국내외 가맹사업 거래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C사가 얻고자 하는 유동화 대출금(ABL)의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C사의 장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재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는 본고의 목적이 아니므로 일단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법률 검토에 한정하기로 한다.

Ⅲ. 프랜차이즈 방식에 의한 영업망의 확충

1. 문제의 제기

그 동안 교육 인프라 투자에 주력해 온 B펀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에 의하여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사립대학의 민자 기숙사를 건설한 다음에 그 시설의 관리·운영은 해당 학교에 일임해 왔다. 비록 학교시설의 관리·운영 및 원리금 상환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⁶⁾를 설립하고 B펀드도 그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만 시설의 관리·운영에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데다 B펀드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학교시설의 운영에 B펀드가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거나, 사안 별로 사전 협의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제 B펀드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학교시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원리금 회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B펀드가 좀 더 깊이 관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익시설의 경우 수입을 원리금 상환에 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가 만연될 경우 B펀드는 돈만 대주고 투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지속적인 교육시설 개선작업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

이것은 B펀드가 투입한 자원이 비수익(non-profit) 시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는 관리비 지출이 쓸데없이 늘어나거나 불요불급한 지출이 증가할 수

6) 이 경우의 SPC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sponsor)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설립된 非遡求금융(non-recourse financing) 목적의 유한책임 회사이다.

있다. 물론 이러한 시설은 이미 해당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울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 필요는 있다. 각 학교시설의 특징을 살려 주도적으로 창의성 있게 관리·운영하는 것은 권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계할 것은 이러한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차일피일 미루었다가는 나중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은행 담당자는 일차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통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이 유망하다고 보았다. 이 방식은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여 중저가 숙박업소를 관광객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⁷⁾

2. [사례 1] 컨설팅의 개요

(1)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B펀드가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프랜차이즈를 적용사례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영업상의 노하우를 갖게 된 B펀드가 가맹사업자가 되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가 재정적으로 지원한 학교시설의 관리·운영하고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면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A은행의 컨설팅 담당자는 대상시설의 프랜차이즈식 관리 운영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사항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첫째는 표준화된 계약의 체결이다. B펀드는 대상시설의 건설 리모델링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당해 시설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가맹본부(Franchisor)의 역할을 한다. 그의 자금지원을 받은 시설은 B펀드가 설정한 일정한 방식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

7)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중저가 숙박업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객실 수가 적은 중저가 숙박업소는 마케팅 부족으로 객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일부 객실을 장기베이스로 계약하고 시설을 개보수한 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식 영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가맹점으로서의 일정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객실 판매를 늘릴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인터넷을 통해 예약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객실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허극, “중저가 숙박업소 이용 활성화 방안: 전자상거래와 프랜차이즈전략 도입을 중심으로”, 경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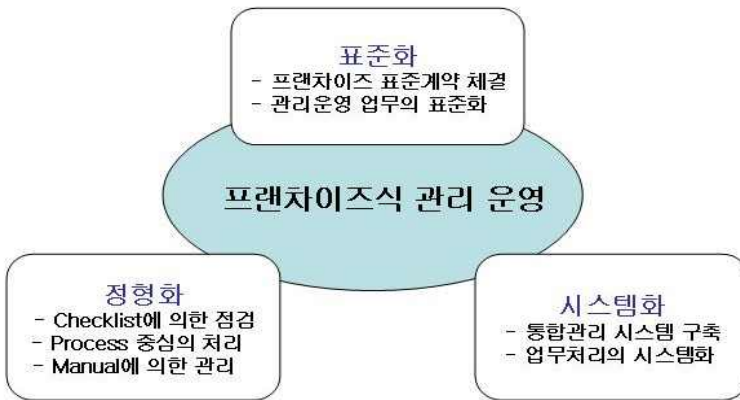
는 가맹점(Franchisee)이 된다.

둘째는 정형화된 방식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한다면 CPM 기법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PM 기법이란 대상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체크리스트(Checklist)를 만들어놓고 프로세스(Process) 중심으로 매뉴얼(Manual)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⁸⁾

셋째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전국 각처에 소재하는 학교시설을 적은 비용으로 관리하자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통합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B펀드는 프랜차이즈 방식에 의하여 통일된 서비스 기준과 업무처리방식을 적용하여 중앙집중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상 시설이 제대로 관리 운영되는지 통제할 수 있다. B펀드가 직접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가맹본부가 되어 가맹금(franchise front money)과 사용료(royalty), 그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므로 상법 및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1> 프랜차이즈식 관리 운영의 기본요소



8) 이강원, “프랜차이즈의 키워드”, 월간 B&F. <<http://www.changuportal.co.kr>>

(2) 기술적인 고려사항

A은행은 본건에서 P/F와 관련된 금융자문을 수행하고 있지만 B펀드가 알아두어야 할 법적·기술적 문제에 대하여도 전문가를 소개하는 등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완벽에 가까운 컨설팅이 B펀드와 여러 P/F 사업에서 전략적 투자자 또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첫째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대상시설을 관리·운영할 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라는 것이다. 통합관리 시스템은 초기 설치비용은 많이 들지만 시설의 관리·운영을 상당 부분 자동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왕에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이것을 기본 모델로 하여 각각의 시설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⁹⁾ 그리고 관리·운영 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관리·운영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¹⁰⁾

통합관리 시스템은 대상시설의 이용자 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통합관리 시스템은 크게 실시간 감시 및 제어(real-time monitoring and control)를 처리하는 모듈과 시설물 유지관리(facility management system: FMS)를 수행하는 모듈로 나누어진다.¹¹⁾ 전자는 통합관리 시스템의 MMI(man-machine interface) 화면을 이용하여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비(기계, 전기, 공기조화, 조명 등)의 운전상태를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기능이다. 이때 각 설비들의 운전 내역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시설물 유

9) 이를 위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시스템의 구성부분을 모듈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의 용도에 따라 스탠더드형과 프리미엄형으로 나누어 실정에 맞게 채택하면 좋을 것이다.

10) 기숙사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항공기 예약시스템(computerized reservation system: CRS)을 도입하여 빈 방이 없으면 인근 학교 기숙사의 공실을 임시로 이용하게 하고, 관광지 부근의 기숙사는 방학 때 생기는 빈 방을 학생 가족들에게 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1) FMS는 대상시설의 건설 참여자(발주자, 감리자, 시공회사, 협력업체) 간에 공사에 관한 의견교환 및 공사관련 정보(도면, 문서, 사진)의 공유, 주요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정보 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PMIS, FMS는 건설공사의 수행 및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며, 완성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FMS는 관리조직의 규모, 업무 프로세스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솔루션을 개발해야 하므로 개별 업무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 경영 시스템) 솔루션의 개발이 요청된다. 김형은, 「학교시설 BTL사업 중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12.31, 100~101면.

지관리 모듈에서 각종 설비의 이력관리에 이용된다. 후자는 시설 내의 각종 설비 또는 시설물의 설치 시점부터 운영현황, 보수현황 등의 이력을 관리하는 기능과 기초 정보관리, 작업관리, 도면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은 실시간 감시 및 제어 모듈과 연계되어 예방 및 보전을 수행하므로 시설물의 수명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과평가로서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평가항목 및 기준을 객관화·계량화하고, 성과확인 및 점검단계에서 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후에 이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량화된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부여를 하고 최종 성과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통합관리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관리를 통해 운영기간 중의 성과보고, 성과점검, 성과확인,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서류작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설이용자의 하자보수 신청이나 시설물의 도면관리는 물론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정리, 각종 보고서의 작성에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적인 고려사항

A은행은 사내 법무팀의 조언에 따라 B펀드가 수행하게 될 사업이 법적으로 가맹업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기로 했다.

만일 B펀드가 공적 기관 내지 공적 기금으로서 공법상의 규율을 받는다면 상법 및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상시설이 가맹금 없이 프랜차이즈에 가입할 수 있고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양도, 계약의 해지에 관한 다툼도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희망자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franchise disclosure) 제도 역시 직접 적용이 없다.

그러나 B펀드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시설에 대하여 가맹금을 받고 정기적으로 로열티를 받는다면 이는 가맹사업법상 공정화 거래의 대상이 되어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전형적인 부합계약(take-or-leave contract)으로서 가맹본부가 미리 정한 계약 내용을 가맹희망자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 계약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없

고 단지 계약체결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가맹계약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정 규모의 투자를 장기간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번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상당기간 당사자를 구속한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계약의 내용이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¹²⁾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자력으로 수집할 수 없는 중요 정보를 가맹본부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¹³⁾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규칙(FTC Rule 1978)으로, 일본에서는 사단법인 프랜차이즈협회의 1983년 등록사업운영규정에 의하여 각각 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¹⁴⁾

가맹사업법에 따라 B펀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지도·통제, 가맹계약의 해제·해지·갱신 기타 해당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공개사항을 수록한 정보공개서(동법 제2조 제10호)를 소정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6조의2 제1항). 그리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A은행이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B펀드가 이러한 법정 의무사항을 직접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담 수행하는 조직을 따로 두거나, 아니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피해 가맹금을 받지 않은 채¹⁵⁾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대상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권유하기로 했다.¹⁶⁾

12) 홍순재, 앞의 논문, 12~13면.

13)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는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교섭 단계에서 형성된 특수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계약체결에서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의 하나로서 계약법상 인정되는 의무라 할 것이다. 위의 논문, 13~14면.

14) 위의 논문, 16면.

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맹사업법 제3조 제1호,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

16) 이러한 경우에도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B펀드의 자금 지원을 받는 대상시설의 관리운영을 그의 통제 하에 둬으로써 투융자 재원의 순조로운 회수를 촉진하는 동시에 대상시설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설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함이다.

IV.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자금조달

1. 신중 상행위를 이용한 유동화 거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중 상행위로 알려진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은 모두 현금흐름(cash flow)을 중시하는 영업행태이다.¹⁷⁾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납부하고 가맹본부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서비스에 대한 대가 외에 가맹본부의 상호·상표·영업표지 등에 대한 사용료(로열티)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금과 로열티 등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문제는 가맹점사업자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으나, 또 원리금 상환재원이 되는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007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로 자산유동화(ABS)¹⁸⁾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것은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부 대출채권¹⁹⁾이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대거 부실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신용경색과 금융위기를 유발하고 CDO²⁰⁾ 등 그 원인을 제공한 ABS시장도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도 IMF 위기 직후에 성행하였던 ABS 거래가 대폭 줄어든 대신 ABL 딜이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의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 제정되고 자산유동화 거래가 성행하였으나²¹⁾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촉발한 CDO와 비슷한 거래구조를 가진 ABS 거래가 부진을 면치 못

17) 앞의 세 가지는 각각 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이라는 명칭으로 2010.11.15 시행 개정상법에 관련조항이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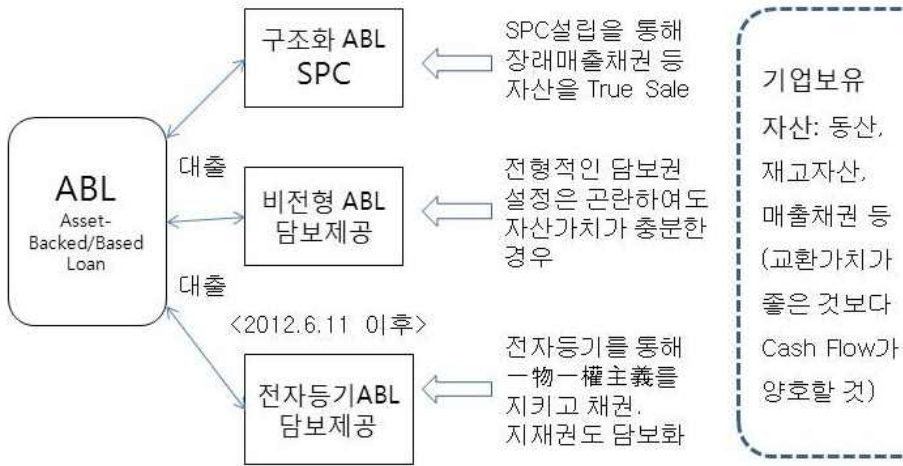
18) ABS는 자산유동화(asset-backed securitization) 거래나 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그 자체를 말한다.

19) 미국의 은행들은 신용도가 낮거나 직업이 일정치 않은 사람, 미국 사회에 아직 정착하지 못한 소수 민족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줄 때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금리가 그보다 높은 ‘sub-prime’ mortgage loan을 빌려주었다.

20)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는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으로서 주택담보부 대출채권(mortgage loan)이 부족해지자 그밖에 조건이 다른 부채(debt)를 추가하여 유동화하고 포괄적으로 부채담보부 채권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21) 박원일, “자산유동화에 의한 금융위기의 극복과 시사점”, 정동윤선생 고회기념논문집, 법문사, 2009, 298~303면.

<그림 2> ABL의 추진방식



하고 수년간 추진해오던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작업도 보류되고 말았다.²²⁾

본래의 ABS 거래는 위축되었으나 그 대신 안정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²³⁾에 양도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담보부 대출(asset-backed loan: ABL)을 받는 구조화(또는 유동화) ABL이 성행하고 있다.²⁴⁾

22)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2004년과 2006년, 2008년 구성하였고 최종적으로 개정 법률안까지 마련하였다. 2008년 8월에는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과생계약을 활용한 유동화 등 다양한 구조의 자산유동화를 위험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활성화하고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까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9월 국회 논의과정에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몰고온 합성 CDO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 자체가 보류되고 말았다. 위의 논문, 296면 각주 5).

23) 자산유동화는 반드시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SPV)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ing)이라고도 한다.

24) 그밖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담보가치가 아닌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출(asset-based loan)을 받는 비전형 ABL도 있다. 이것은 자산의 담보가치가 아닌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진 저당권 등 典型的인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해 경매 등의 환가처분에 의해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지만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으로는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담보용 부동산은 부족해도 자산가치가 큰 영업용 동산이나 매출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거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출은행이 호의적이라면 ABL 딜을 추진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2. [사례 2] 컨설팅의 개요

(1)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A은행의 담당자는 C사의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나오는 가맹금, 로열티 등 장래의 현금흐름을 철저히 분석했다. 아직 C사의 패스트푸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용보강을 조건으로 현금흐름을 유동화함으로써²⁵⁾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현금흐름이 상당액에 달하므로 C사는 일단 가맹사업 자산을 SPC에 양도하고, SPC는 이를 다시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은행은 C사의 가맹금, 로열티 등을 받는 에스프로 계정을 관리하면서 SPC의 현금흐름에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크레딧라인을 제공하는 등 유동화 ABL 거래의 성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2) 오리엔탈정공의 사례

본건에서 C사가 참조할 수 있는 유동화 ABL 거래는 2010년 5월 국내 우수 조선사의 협력업체가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일본 은행으로부터 2천만달러의 외화를 조달한 사례이다.²⁶⁾ 선박기계 장비 전문업체인 오리엔탈정공은 자체 신용등급이 'BBB-'에 불과함에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장래 받게 될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일본 미즈호은행으로부터 자산담보부 대출(외화 ABL)을 받는 데 성공했다. 만기 3년, 금리는 LIBOR와 연동된 변동금리로 6%대 초반의 수준이었다.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은 'One KDB'의 공동작업을 통해 오리엔탈정공이 소형 해양플랜트 사업, 고급사양의 주거용 바지선 생산 등 신규 사업으로 단기차입금 비중이 총부채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높아진 것에 주목했다. 오리엔탈정공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은행은 그 계열사인 대우증권과 함께 오리엔탈정공의 차입구조의 장기화를 위해 2008년 말부터 JP모건, 스탠다드차타드 등 8~9곳의 글로벌 금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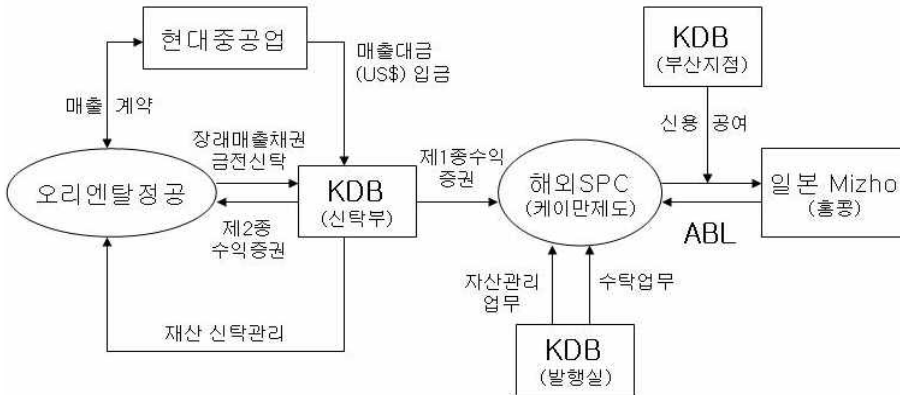
25) C사의 장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6월 11일부터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출채권을 전자등기하고 이들 채권을 담보로 하여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26) 머니투데이 2010.5.28. <<http://www.mt.co.kr/>>

관과 협상을 벌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로 진전이 없었다. 이에 산업은행 측은 단순한 기한연장을 노리지 않고 매출채권이 세계 최대의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의 장기간에 걸친 거래에서 유래한 것이고 현금흐름이 안정적임을 부각시켰다. 그리하여 세계경기가 호전될 조짐을 보인 2009년 하반기부터 협상을 재개하여 산업은행 홍콩법인과 꾸준히 접촉해 온 미즈호은행과 마침내 1년 반 만에 거래를 성사시켰다.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아 금리가 높아질 수 있었으나, 차주사가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꺼리고 자금수요가 급한 것도 아니어서²⁷⁾ 산업은행 측은 필요하다면 신용공여를 해주기로 했다.²⁸⁾ 유동화 대상자산은 ABL 차입액인 2천만달러의 금전신탁 제1종 수익증권이지만 대주가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도록, 신탁개시일로부터 3년간의 신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그 2.5배에 해당하는 5천만달러의 장래 매출채권을 금전신탁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금전신탁은 매달 예상 현금흐름에서 제1종 수익증권에 분할상환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무액면으로 발행한 제2종 수익증권을 가진 차주사에 지급하게 된다.

<그림 3> 오리엔탈정공의 유동화 ABL 메커니즘



27) 차주인 오리엔탈정공은 자체 신용등급에 비해 조달 코스트가 낮았는데 이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시간과 노력 대비 수수료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었다. 해외 투자자가 원하는 금리 수준과 차주가 원하는 금리의 점점을 찾기 위해 주간사를 비롯한 참여기관들은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28) 산업은행 부산지점은 ABL 총액의 120%인 24백만달러의 크레딧라인을 제공했다.

또한 이번 달은 증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는 구조라서 원칙적으로 신용등급 평가(credit rating)²⁹⁾나 유가증권발행 신고가 불필요하고, 특수목적회사(SPC)를 조세피난처인 케이만 제도(Cayman Islands)에 설립하여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3. ABL 거래의 특징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ABL 거래는 수익성 있는 자산이 채권회수를 담보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구조화 ABL은 기존 ABS기법과 마찬가지로 SPCL을 설립하지만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³⁰⁾ 자금소요액이 크더라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는 것이므로 신용평가 등 각종 투자자보호 장치를 피할 수 있으며 SPCL을 통해 자산보유자의 도산으로부터 절연(bankruptcy remote)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일 SPCL을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절감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A은행 담당자는 C사에게 유동화 ABL은 유가증권 발행 없이 이루어지므로³¹⁾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페이퍼컴퍼니이지만 SPCL 설립을 요하며 장래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비교적 거액의 대출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은행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절연된 SPCL에 대출을 하는 것이므로 SPCL가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을 받을 경우 대출자산의 신용위험(credit risk)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³²⁾ 새로운 금융기법인 ABL은 기존 전형적인 담보권과는 사뭇 다른데 이

29)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SPCL에 대한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투자적격(BBB-) 이상의 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BIS 비율을 산정할 때의 자기자본 차감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외부 신용평가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ABL의 추진이 곤란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는 대신 일체의 현금흐름을 집중시킨 에스크로 계정을 관리하는 은행과 금전신탁계약을 맺고 금전신탁이 ABL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30) 구조화 ABL은 자산유동화 구조를 취하지만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와 함께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않는 “비전형(또는 非登錄) ABS”로 분류된다. 비슷한 거래구조로 일단 대출을 하고 이를 유동화한 사례로는 2001년 2월의 천안-논산 고속도로 파이낸싱이 있다. 당시 산업은행은 소요자금 중에서 7,300억원을 대출한 후 그 원리금을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만기 5~15년짜리 6종의 채권을 발행했다. 박원일, 앞의 논문, 304면, 312면 각주 50).

31) 신BIS 룰에 의하면 ABL의 경우에도 적격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받지 않으면 자본차감 대상이므로 은행이 취급하는 ABL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생략할 수 없다.

는 채무불이행 시 경매 등의 방법으로 교환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없고 현금흐름을 계속 유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³³⁾ 종래의 담보권이 주로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물권적인 거래구조를 취하였다면 ABL이라는 새로운 금융 기법은 계약에 입각한 채권적인 거래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담보법제의 ‘패러다임의 변화’³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³⁵⁾

4. ABL에 대한 법적인 검토

전세계적으로 담보제도의 개선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³⁶⁾ 우리나라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전자등기를 전제로 중소기업·자영업자들도 보유 동산, 매출채권, 지재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한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다.³⁷⁾ 그러나 새 법률이 장래에 취득할 동산이나 장래의 매출채권까지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더라도 채권자가 어느

32)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점은 기존 담보법제의 효용이 크게 줄어들고 새로운 형태의 채권회수 확보 방안이 부각되고 있는 사실이다. 일단 채권자투자자가 기대하는 대로 만기에 원리금을 회수할 정도의 장기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credit risk], 채무자의 파산 등을 이유로 담보로 잡은 자산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legal risk].

33) Park, Whon-II, "A Paradigm Shift in a Modern Law on Secured Transac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s, Feb. 2003, pp.71-79.

34)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란 말은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에 대하여 처음 사용한 이래 천문학에 있어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것처럼 사고기준이 극적으로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가리킨다. 우리말로는 ‘구조적 변화’ 또는 ‘지각변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5) 이 말은 2002년 7월 일본의 민법학자인 前 동경대학의 우치다 다카시(内田 貴) 교수가 신주쿠 기노쿠니야 홀에서 행한 강연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内田 貴, “擔保法のパラダイム”, 『法學教室』, 2002.11 No.266, 7~20面.

36)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07년에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을 채택한 데 이어, 2010년 6월에는 지재권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보록(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을 마련하고 각 회원국에 입법을 권고하고 있다.

<http://www.uncitral.org/pdf/english/texts/security-1g/e/Final.Draft.15_July.2010.clean.pdf>. 이에 관한 해설자료는 석광현,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법무부, 2010.4. 참조.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의 법무지식>간행물 섹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7)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동산, 매출채권, 지재권 등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담보등기를 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기 마련하였다. 두 법안은 2009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마침내 2010년 6월 10일 공포되었다. 기업이 보유하는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지재권 심지어는 농가의 가축까지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한 이 법률은 법원의 전자등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2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도로 대출을 해줄지 여부는 그 담보가치를 얼마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새 법률에 의한 전자등기로써 담보로 할 동산과 매출채권을 특정할 수는 있지만 그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는 동산·채권담보법의 시행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구조화 ABL은 대출금액이 거액이고 금융기관이 차주의 도산으로부터 절연된 SPC³⁸⁾에 대출을 하는 구조이므로 당사자의 자원에 맡기는 게 좋을 것이다. 이 경우 매출채권을 대거 SPC에 양도하는 결과 일반채권자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이러한 매출채권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좋으면 기업의 향후 상환능력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비록 대출을 받아 당장 현금성 자산이 늘어날지라도 담보가 없는 일반채권자들로서는 장래의 중요한 상환재원으로부터 절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PC를 설립하더라도 채권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변형 (variations)이 생길 수 있다.

V. 맺음말

프랜차이즈는 외국에서 유래하여 국내 도입된 신종 상행위 유형이지만 얼마든지 국내 실정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른바 CPM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거래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거래는 어느 정도 일정한 현금흐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금조달 원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경기가 나쁘고 담보로 제공할만한 부동산이 없다 해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차입을 하여 기업활동을 수행하게 마련이다.³⁹⁾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수익자산을 토대로 자금을 빌리되 전형적인 담보거래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는

38) 유동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SPC의 설립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법상의 주식 회사 형태를 취하게 된다.

39) The availability of asset-based loans often spells the difference between profitable growth or failure for an undercapitalized company. Sydney S. Goldstein, “§12:6 Asset-based financing”, *A Practical Guide to Secured Financing*, Practising Law Institute, July 2010.

것이다. 현금흐름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채권회수의 위험을 배제하는 법적인 틀 (legal frame)만 갖추어 채권자 등 거래당사자를 만족시키는 금융기법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차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려면 담보물의 교환가치 대신에 장기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담보가 없다고 거절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익자산이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법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고안할 때에도 유용하다고 본다.⁴⁰⁾

한편 돈을 빌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의 틀을 넓힐 수 있고 대주와 차주 쌍방에게 좋은 의미에서 긴장감을 배경으로 관계(relationship management: RM)를 강화할 수 있다. 예컨대 차주인 기업은 종전과 같이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지 않고 성장을 위한 공격적인 운영자금 조달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어 기업금융의 니즈에 부응하는 셈이 된다.

프랜차이즈 한 가지를 놓고서도 이와 같이 새로운 사업기회, 자금조달원을 모색할 수 있거니와 오늘날의 은행들은 고객과의 정보교류를 원활히 하면서 창의적인 업무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은행의 경쟁력은 단순한 자금조달·운영 능력에 있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위험관리 능력과 항상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이노베이션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40) 구조화 ABL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SPC를 설립하여 유동화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안정된 스킴을 짜는 데 적지 않은 비용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문헌

- 김진섭·김혜영,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대왕사, 2002.
- 김형은, 「학교시설 BTL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12.31.
- 박환일, “자산유동화에 의한 금융위기의 극복과 시사점”, 「21세기 상사법·민사소송법의 과제」(정동윤선생 고회기념논문집), 법문사, 2009.5.
- 이강원, “프랜차이즈의 키워드”, 월간 B&F. <<http://www.changupportal.co.kr>>.
- 허 극, “중저가 숙박업소 이용 활성화 방안: 전자상거래와 프랜차이즈전략 도입을 중심으로”, 경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홍순재, “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2.
- 석광현,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법무부, 2010.4.
- 内田 貴, “擔保法のパラダイム”, 「法學教室」 No.266, 2002.11.
- Whon-II, Park, "A Paradigm Shift in a Modern Law on Secured Transac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s, Feb. 2003.
- Sydney S. Goldstein, “§12:6 Asset-based financing”, A Practical Guide to Secured Financing, Practising Law Institute, July 2010.
- 인터넷 뉴스 Naver <<http://www.naver.com>>, Google <<http://www.google.com>>,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2010.10.15 최종 방문]

<ABSTRACT>

A Sustainable Business Model by Taking Advantage of Characteristics of Franchise

Whon-il Park

Franchise is one of the brand new business types recently stipulated in a concrete manner in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Franchising is a business method that involves licensing of well-known trademarks and business knowhow, and exclusive rights to sell such branded merchandise or services. Taking advantage of these characteristics of franchise, Korean banks are expected to enhance their non-financial support to their clients and increase their own fee business revenue.

The first business model is to consolidate the necessary operation and maintenance (O&M) of facilities in the same manner as franchising like the CPM method employing checklist, process and manuals. By doing so, the reduction of facilities O&M costs could lead to the enhanced satisfaction of users, and derivative business like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facilities management systems and specialized O&M companies. In order to facilitate this kind of business, standardization of contracts, typical O&M methods supported by sophisticated facilities management systems are inevitable among others. Owing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franchisor and would-be franchisees, the franchisor is required to disclose detailed information about its business operations under the relevant Korean law. But this requirement is exempted if no franchise front money is demanded by the franchisor.

The second business model is to borrow loans backed by the present and/or future cash flows generated from the licensing of trademarks and business knowhow, i.e., asset-backed loan (ABL). It is feasible when such specific franchise market has not yet been saturated and cash flows are assessed stable and sufficient, and the whole assets could be transferred to a

special purpose company (SPC) which may apply for ABL from the banks. It means a new trend of fund-raising based upon the stable cash flows rather than conventional secured transactions. That is an unquestionably attractive source of funds for a franchisor with insufficient collateral assets.

Therefore, financial institutions, specialized in long-term financing and equipped with path-finding consulting capabilities, have a good chance to encourage client companies to conduct the value-added new business, and to provide them with necessary financial assistance. As for Korean banks, it seems to be a lucrative business area when the franchising industry is growing in terms of tangible assets and profitability.

Key Words : franchise, franchisor, franchise disclosure, special purpose company (SPC), cash flow, asset-backed loan (ABL)
